대한이식학회 개최 학술대회 참가지원에 관련된 대한이식학회 업무 규정

2018년 3월 28일 신설

1. (목적) 본 업무규정은 대한이식학회 개최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을 위한 대한이식학회의 업무를 규정한다.

2. (참가지원의 원칙) 대한이식학회 개최 학술대회 참가자의 참가지원은 한국제약협회와 다국적제약협회의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영기준에 준하여 운영한다.

3. (지원자의 조건) 대한이식학회 개최 학술대회 참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가. 대한이식학회 정회원 혹은 준회원으로, 당해년도 년회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나. 대한이식학회 개최 학술대회 좌장, 연자, 토론자, 발표자 (포스터 발표자 포함, e-포스터 발표자 1인 포함)는 대한이식학회 개최 학술대회 주최자측에서 선정한 보건의료전문가(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이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한다.

다. 발표자의 경우 주저자 1인 외 공동저자 1인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 단, e-포스터 발표자의 경우 발표자(주저자) 1인만 지원이 가능하다.

4. (여행사 지정) 대한이식학회 개최 학술대회 참가자의 여행관련 업무보조를 위하여 각 대한이식학회 개최 학술대회마다 대한이식학회 공식지정 여행사를 지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5. (모집과 선정) 대한이식학회 개최 학술대회 참가자 모집 및 선정은 다음의 절차로 진행한다.[별첨 1]

가. 대한이식학회 개최 학술대회 참가자 신청은 대한이식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대한이식학회 개최 학술대회 개최 2달 전에 공지한다.

나. 대한이식학회 개최 학술대회 참가자는 대한이식학회 기획위원회에서 대한이식학회 개최 학술대회 개최 1달 전에 심사하여 지원자를 선정한다. 참가자 심사 및 선정결과는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다. 지원자는 한국제약협회와 다국적제약협회에서 승인된 지원자 숫자(지원가능 숫자) 내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지원내역) 대한이식학회 개최 학술대회 참가지원의 범위는 실비의 교통비, 등록비, 식비, 숙박비이며, 각각의 지원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교통비

A. 항공비는 이코노미클래스로 목적지까지 최단거리 왕복운임. (보딩패스 반드시 필요)

철도교통비(일반실 기준)/ 고속버스비(우등포함)는 목적지까지 최단거리 왕복운임. (영수증 또는 승차권 반드시 필요)

B. 택시비 등 기타 현지 교통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나. 등록비: 사전등록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다. 식비: 1일 3식 지원하며, 현지 식당에서 개인카드 또는 현금으로 결제한 영수증을 1식 1장 5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라. 숙박비: 1박당 20만원 이내까지만 지원한다. 학술대회 1일전 입실부터 학술대회 종료일 퇴실까지의 숙박비를 지원 하되, 미니바, 영화, 세탁, 전화 등의 부수비용 지원은 불가하다.

8. (지원정산) 대한이식학회 개최 학술대회 지원 정산을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완료되어야 한다.

가. 지원자의 학회 초청장(좌장, 연자, 토론자) 또는 초록채택메일 사본 및 결과 보고서

나. 지원자별 지원 내역 및 영수증 원본

다. 정산을 위한 서류 및 증빙자료는 대한이식학회 개최 학술대회 종료 후 2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간내 미제출시에는 지원이 불가하다.

9. 본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한국제약협회와 다국적제약협회의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영기준을 따른다.

10. 이 규칙은 대한이식학회 상임이사회 승인 후 바로 시행된다.

[별첨1] 대한이식학회 개최 학술대회 참가지원의 전체일정

일정	주요업무	내용
3 개월전	[제약회사] 대한이식학회 개최 학술대회 지원신청	1) 협회는 1,4,7,10월에 전 분기 학술대회 참가자지원 내역 (학술대회명, 학술대회 주최자, 지원 사업자명, 지원총액, 지원자수, 지원자 소속 요양기관명 등)을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함 2) 각 제약회사가 지원을 원하는 회원, 지원가능한 인원수 등을 기준으로 해외학회 참가자 조율
2 개월전	대한이식학회 개최 학술대회 참가지원 신청서 접수 및 선정	
1 개월전	대한이식학회 개최 학술대회 참가지원자 선정	[기획위원회→상임이사회]
1 개월전	대한이식학회 개최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의 내용 및 제반 서류 발송	
D day	대한이식학회 개최 학술대회 참석	
대한이식학회 개최 학술대회 후 2주	대한이식학회 개최 학술대회 참가 지원자의 서류 및 증빙자료 회수	협회는 학술대회 종료 후 학술대회 주최자로부터 실비의 교통비, 등록비, 식대, 숙박비에 대한 증빙자료와 함께 실비정산 내역서를 받아 검토하여 이를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지원금을 협회로 납부하도록 하여 학술대회 주최자측(선정된 기관)에 전달
대한이식학회 개최 학술대회 후 90일	정산 완료 및 영수증 발급	참가자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취합하여 검토 후 규약심의 위원회 심의요청, 지원사 청구 등의 절차 로 인해 최종적으로 학술대회참가자 선정기관에 지원금액이 전달되기 까지 최대 90일이 소요

[평가항목] 대한이식학회 개최 학술대회 참가지원자 선정을 위한 대한이식학회 기여도 평가항목

선제조건		
선제조건		설명
대한이식학회 정회원 혹은 준회원 등록여부	필수	지원자 심사전에 정회원 혹은 준회원으로 등록이 완료되어야 한다.
해당 학술대회 발표자인가?	필수	증빙자료를 대한이식학회에서 확인. 하나의 연제에 대하여 주저자 및 공저자 포함하여 2인까지 지원가능
당해년도 대한이식학회 년회비가 납부되었는가?	필수	대한이식학회 년회비 완납 확인
대한이식학회 기여와 참여 정도의 점수항목		
평가항목	배정점수	점수 산정방법
1. 대한이식학회 고문, 자문 및 상임이사 이었나?	10	고문, 자문, 상임이사(현직 및 과거경력자)
2. 해당년도의 각 위원회의 위원인가?	10	현재 재임중인 각 위원회(정규 및 특별)의 위원은 5점을 부여한다. 다수의 위원회에 참여한 경우에는 1건당 5점을 부여하나, 본 항목의 점수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해당년도 이전 2년간의 대한이식학회 년회비를 납부하였는가?	6	년회비 완납 1건당 3점을 부여한다.
4. 해당년도 이전 2년간의 대한이식학회가 개최한 정기학술대회(춘계/추계)에 참가하였는가?	8	각 학술대회 참석당 2점을 부여한다. 참여여부는 학술대회 등록을 기준으로 한다.
5. 해당년도 이전 2년간의 대한이식학회가 개최한 정기학술대회(춘계/추계)에 좌장으로 참여하였는가?	8	각 학술대회 좌장 참여당 2점을 부여한다. 단 같은 학술대회에서 2회 이상의 좌장을 담당한 경우에도 2점만 부여한다.
6. 해당년도 이전 2년간의 대한이식학회가 개최한 정기학술대회(춘계/추계)에 구연발표자로 참여하였는가?	8	각 학술대회 구연발표자 참여당 2점을 부여한다. 단 같은 학술대회에서 2회 이상의 구연발표를 시행 한 경우에는 각각 2점씩 부여하나, 본 항목의 점수가 8점을 초과할 수 없다. 구연발표자는 해당 학술대회 프로그램집에 게시된 발표자로 정의한다.

7. 해당년도 이전 2년간의 대한이식학회지에 게제된 논문에 제1저자 혹은 책임저자로 참여하였는가?	20	각 대한이식학회 게재 논문당 5점을 부여한다. 해당기간중 게재된 논문의 숫자만큼 점수를 부여하되, 본 항목의 점수가 16을 초과할 수 없다. 공동 제1저자와 책임저자는 각각의 공저자에게 4점씩 부여한다. 점수를 부여하는 논문의 형식(원저,증례,종설, 기타보고 등)에 관계없이 같은 점수를 부여한다.
8. 해당 대한이식학회 개최 학술대회에서 자유연제 구연 발표자인가?	20	Mini-oral을 포함한 구연발표시간이 명시된 구연발표자인 경우에는 20점을 부여한다. 본 항목은 오직 발표자 1인에게만 부여한다.
9. 제출된 초록에 대하여 지원자가 1인인가?	10	제출된 초록에 대하여 1인만 지원하는 경우에는 10점을 부여한다.
참여 및 기여도 총점	100	총점이 높은 순서로 지원자를 선정한다. 총점이 같은 경우에는 당해년도 지원경력이 없는 자중에서 3항(연회비 납부실적), 9항(자유연제 구연자), 7항(대한이식학회 게재실적), 6항(학술대회 구연실적), 5항(학술대회 좌장실적), 4항(학술대회 참가실적)의 순서로 항목별 점수가 높은 자를 선정한다. 상기까지의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가 우선한다.